

■ 튜터 업무 매뉴얼 (학부대학 글쓰기) 中

<글쓰기> 튜터 제도 운영 세칙 (2021.12.27 개정)

1. 튜터 제도의 시행 목적

- 1) 튜터 제도는 글쓰기 강의 체계를 조직화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.
 - (1) 교수·강사와 튜터의 유기적 결합으로 효율적인 강의·평가 시스템을 구축한다.
 - (2) 학생들의 공부 시간을 늘리고, 학생들의 효율적인 학습을 돕는다.
 - (3) 과제물 부과와 이에 대한 효율적인 확인·평가 시스템을 구축한다.
- 2) 튜터 제도는 튜터로 하여금 글쓰기 교육을 위한 이해와 수련의 과정을 밟게 하여 ‘준비된’ 강사를 원활하게 충원하고 배출할 수 있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.

2. 튜터의 지위 및 보수

- 1) 튜터는 강의의 또 다른 주체로서, 능동적으로 교수·강사의 역할을 돕는다.
- 2) 튜터는 단순한 조교와 달리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, 학부대학에 고용되어 글쓰기 책임교수의 관리감독을 받으며, 한 학기 250만원의 보수를 받는다.
- 4) 튜터는 담당 교·강사의 수업 운영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, 불성실한 활동으로 인해 강의, 교수자, 학생의 수업권 등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.
 - 불성실한 활동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, 해당 튜터는 향후 5년간 지원 자격을 박탈하고, 소속 대학에 통보할 수 있다.

3. 튜터의 선발과 계약

- 1) 튜터는 글쓰기와 관련된 인문·사회 분야의 대학원 박사 과정 재학 이상인 사람을 공모를 통해 선발한다.
- 2) 튜터는 글쓰기를 담당하는 교수와 글쓰기 두 강좌를 맡는 강사에게 배정된다.
- 3) 튜터는 교수·강사와 1년 동안 함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4) 우수한 평가를 받은 튜터는 글쓰기 강사 선발에 지원할 경우 가산점을 부여받을 수 있다.
- 5) 튜터는 매 학기 평가를 받아야 하며, 이에 의해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.

4. 튜터의 업무

- 1) 튜터는 강의 지원 활동으로는 종합 강평, 개별 피이드백 강평, 조별 토론 성과물 점검, 쪽지시험 출제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.
- 2) 튜터는 강좌 당 한 학기 6시간 강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(두 강좌 합 12시간을 넘지 않도록)

록 한다.)

- 3) 튜터는 강좌 당 한 학기에 1회 이상 최대 3회(두 강좌 합 6회) 이하로 전체 수강 학생에 대한 개별 피이드백 강평을 실시하며, 개별 피이드백 강평은 강의 이외의 시간이나 온라인으로 진행한다.
- 4) 튜터는 담당 교수자와 협의하여 다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.
 - 조별 발표 및 토론 성과물 점검 및 평가
 - 읽기 과제에 대한 쪽지시험 문제 출제 및 평가
- 5) 튜터는 수업 진행 과정 전반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교수자와 정기적으로 논의해야 한다.
 - 강의 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해 개강 전에 반드시 함께 논의한다.
 - 학기 중에는 한 달에 2회 이상 논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5. 튜터의 평가

- 1) 튜터는 매학기 후에 본인의 튜터 활동에 대한 자체평가보고서를 제출하고, 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활동한 구체적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.
 - 담당 교수자의 평가: 60%
 - 튜터의 자체 평가 보고서: 40%